[별표 3]

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(제4조제2항 관련)

시험 방법 기준

EM101

제정 2010년 7월 29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자체 선언된 문서의 기준 적합성에 관한 검증 절차 및 방법

EM101:2010

친환경
기후에너지환경부

기후에너지환경부

제 정 자: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제 정: 2010년 7월 29일 환경부고시 제2010-97호
최 종 개 정: - 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-
원안 작성자: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(전화 1577-7360)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<https://ecosq.or.kr>를 이용하여 주십시오.